「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

1. 수정이유

- O 장수 어르신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경로 효친 사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,
-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의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하여 장수축하금의 의미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우리 시 재정 상태 역시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O 제2조, 제4조, 제5조 및 부칙 제2조의 일부 조문 변경
 - 지급연령 변경

- 당초 : 만 90세

- 변경 : 만 100세

• 지급금액 변경

- 당초 : 10만원

- 변경 : 100만원

「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만 90세 이상인 사람"을 "만 100세 이상인 사람"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만 90세가 되는 날"을 "만 100세가 되는 날"로 한다.

제4조 중 "10만원의 현금"을 "100만원의 현금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"만 90세 생일"을 "만 100세 생일"로 한다.

부칙 제2조 중 "만 91세 이상 어르신은 만 90세로 보고"를 "만 101세 이상 어르신은 만 100세로 보고"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당 초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	제2조(정의)
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"장수노인"이란 주민등록상 <u>만 90세</u>	1 <u>만 100세</u>
<u>이상인 사람</u> 을 말한다.	<u>이상인 사람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"지급기준일"이란 주민등록상 만	3
9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.	만 100세가 되는 날
제4조(지급액)	제4조(지급액)
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	

-----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. 현금 ----. 제5조(지급신청) 제5조(지급신청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 (2) ----수노인은 만 9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 ---- 만 100세 생일 ---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 록지 관할 읍 • 면 • 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만 91세 이상 어르신은 만 90세로 만 101세 이상 어르신은 만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 보고 ---

금을 지급한다.